

대전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111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5. 26 선고 2021나1116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1075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승

변론 종결 2022. 4. 21.

판결 선고 2022. 5. 26.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1075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11. 10. 체결된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673,2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73,2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사이에 2015. 11. 10.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73,2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2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10. 체결된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673,2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2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고,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의 청구취지를 일부(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으로 구하는 금액에 관하여)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1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673,2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3,2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마지막 행 및 그 이하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모두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8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양도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B이 D로부터 장래에 지급받을 합계 1,014,153,551원의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채권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다. 이와 같이 B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B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중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양도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중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양도 부분은 피고가 B으로부터 이전받은 영업권의 감정가액인 673,283,724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673,283,72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를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중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양도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본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채권자가 그 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한정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중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양도 부분'으로 한정할 수 없다.

① B은 피고에게 D와의 대리점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통하여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양수하였다.

② 이 사건 부속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가입자관리수수료로서 관리수수료와 요금수납수수료로 구성되는데, 관리수수료는 피고가 고객클레임 처리, 해지방어, 정보변경, 공과금 수납 등 가입자관리업무 및 기타 D가 위탁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고, 요금수납수수료는 피고가 가입자의 월간 사용료를 수납대행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피고가 사실상으로는 가입자 관리를 위한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최소한 대리점을 유지하여야 D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나아가 대리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비용을 지출하여야 한다.

④ 이상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중 이 사건 수수료 채권 양도 부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수익자인 피고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조세채권은 개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나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가 필요 없고(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등 참조),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필요로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816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조세채권은 납세고지나 부과처분의 시기와 상관없이 늦어도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201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4. 12. 31.까지 모두 발생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와 2015년 법인세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이 체결된 2015. 11. 10. 이후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당시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조세채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권액은 2018. 10. 26. 기준으로 가산세 등을 제외하더라도 1,066,149,360원이고, 가산세 등을 포함하면 1,396,416,400원에 이른다).

나.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의 사해성 유무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그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B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인 D의 위탁대리점 영업(이하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① B의 2013년도 당기순이익은 204,159,826원이었으나 이후 순이익이 감소하여 B는 2015년도에 786,929,613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한편 2015년도 말을 기준으로 B의 부채총계는 936,951,324원이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자본총계는 -390,237,212원이었다.

②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B은 이 사건 대리점 영업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폐업하였다.

③ B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 대표이사 C와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5. 11. 17.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2015. 11. 17. 이전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 등으로 D로부터 1,014,153,551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B은 D에게 휴대폰 단말기 외상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그 채무액이 B이 D로부터 장래에 지급받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보다 많았으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B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는 영업양도계약이고,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B이 D에게 외상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가 위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채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가 위 영업양도계약으로 양수한 B의 영업의 가액이 673,283,724원이나 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에는 변함이 없다[또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속계약은, D가 피고에게 공급하는 물품의 소유권은 피고가 D에게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D에게 있고(제8조 제4항), 피고는 물품 인도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당해 물품대금을 변제하여야 하며(제9조 제1항), 피고의 가입자에 대한 물품 할부판매에 따라 발생한 할부채권은 D에게 양도하되, 할부채권 양도대가는 단말기 공급가격,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할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하며, 할부수수료 금액은 제외한다(제10조 제1, 4항)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약 내용은 B과 D 사이에서도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과 D 간의 계약 내용이 위와 같다면,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한 B과 D 사이의 계약은 민법상 매매라기보다는 상법상 위탁매매에 가까우므로, D가 B에 대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피고가 D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수수료는 피고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의 체결 이후 D에게 이행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14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가입자관리수수료는 대리점이 가입자관리업무 등을 이행할 경우 D가 그 가입자의 서비스 해지 시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로서, D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그 서비스를 해지하지 아니하는 한 수수료가 지급되므로, 일단 가입자를 유치하기만 하면 상당 기간 동안 잔존하는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실, ② 피고는 D로부터 2015. 11. 17. 이전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로 2015. 11.경 69,333,333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그 수수료 액수가 점점 감소하여 2018. 9.에는 4,310,707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③ 2015. 11.을 기준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가입자 수는 18,911명이었는데, 피고가 신규로 유치한 가입자는 2015. 11. 47.2명, 2015. 12. 22.0명, 2016. 1. 63.명, 2016. 2. 79.명, 2016. 3. 12.명, 2016. 4. 66.명, 2016. 5. 72.명, 2016. 6. 12.명, 2016. 7.부터 같은 해 9.까지 각 3명, 2016. 10. 5.명, 2016. 11.과 12. 각 2명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피고가 2015. 11.부터 2016. 12.까지 신규로 유치한 가입자의 총수는 1,087명에 불과하다), 피고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대부분은 B에서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였던 사실, ④ 피고는 이 사건에서 재무제표, 급여대장이나 계정별 원장 등 피고가 직원들을 고용하여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업무 등을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⑤ B의 대표이사 C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2019고단5123호)에서 "C가 고객 클레임처리나 공과금 수납 등 가입자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돈은 클레임처리에 드는 현실적인 비용 및 D로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을 합쳐서 월 평균 200만 원이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산정근거나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이후 이 사건 수수료를 수령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재고를 처분하는 등 최소한의 영업만 하였을 뿐, 기존 가입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고가 기존 가입자 관리를 위한 용역을 일부 수행하였더라도 그 용역의 대가가 이 사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B의 사해의사 유무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통하여 B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 등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체결 당시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B의 대표이사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B의 재무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② 피고는 B이 1,042,028,922원의 조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후에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이후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수령하였을 뿐 이를 넘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에 의하여 B의 채권자를 해함을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이후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수수료를 전부 지급받은 사실, 피고와 D 사이의 위탁대리점계약은 2018. 12. 31. 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영업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를 B에게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상회복의 범위 가) 이 법원 감정인 G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무렵인 2015. 11. 16.경 B이 영위하던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치는 673,283,724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아 소비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에도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권 가치의 요체인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이 법원 감정인의 영업권 평가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에 따라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영업권 가치를 감정대상으로 하여, 이익기준 평가방법 중 미래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무렵인 2015. 11. 16.경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액을 평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 이후 수령한 이 사건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영업수익을 추정하고, 거기에서 '급여, 복리후생비, 보험료 및 여비교통비' 등 인건비성 경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건물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관리비용 및 '접대비,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판매촉진비' 등 기타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비용과, 감정대상 영업권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등을 추정하여 이를 공제한 다음, 할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 방법에 특별한 오류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은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조세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이 사건 대리점 영업의 가액으로 인정되는 673,283,72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73,283,72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계약 이전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소영

판사박진환

판사김병식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계약체결일을 '2015. 11. 17.'에서 '2015. 11. 10.'로 정정하였다.